

##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~ 1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7. 6. 15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### 1. 개정이유

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의 원활한 보건업무의 추진과 금원산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혁신전담기구(한시정원)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(안 제1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 ⇒ 제112조

나.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인력 배치에 따른 정원조정(안 별표)

- 일반직 7급 중

- 보건소 : 15명 ⇒ 14명(감1)      - 본청 : 81명 ⇒ 82명(증1)

다. 금원산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조정(안 별표)

- 일반직 8급 중

- 사업소 : 9명 ⇒ 8명(감1)      - 본청 : 49명 ⇒ 50명(증1)

라. 혁신분권업무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(안 부칙제2항)

- 존속기간 : 2007. 6. 30까지 ⇒ 2008. 6. 30까지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9조제6항, 제21조제2항

나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다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 : 생략(예산과 다수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음)

##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”로 하고,  
“거창군(이하 “군” 이라한다)”를 “거창군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군에”를 “거창군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(6급3명, 7급3명, 8급2명)중 2명(사업별예산제도 업무 : 6급1명, 7급1명)은 2007년 12월 31일, 3명(혁신분권 업무 : 6급1명, 7급1명, 8급1명)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3명(복식부기업무 : 6급1명, 8급1명, 일제강점하피해조사 : 7급1명)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거창군</u> 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<u>군</u>에 정원의 총수는 680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----- ----- -----<u>거창군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<u>거창군</u>----- -----.</p>

[별표]

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3조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사업소	읍	면	
				소계	농업 기술센터	보건소				
총 계	680	<b>271</b> (269)	14	<b>133</b> (134)	61	<b>72</b> (73)	<b>59</b> (60)	45	158	
정 무 직	1	1								
일반직	소계	534	<b>223</b> (221)	8	<b>77</b> (78)	23	<b>54</b> (55)	<b>39</b> (40)	40	147
	4급	2	1	0	1	1	0	0	0	0
	4~5급	2	1	0	1	0	1	0	0	0
	5급	32	12	3	2	1	1	3	1	11
	6급	143	64	3	10	5	5	10	12	44
	7급	165	<b>82</b> (81)	2	<b>24</b> (25)	10	<b>14</b> (15)	12	12	33
	8급	127	<b>50</b> (49)	0	35	5	30	<b>8</b> (9)	10	24
	9급	63	13	0	4	1	3	6	5	35
별정직	소계	17	1	0	16	0	16	0	0	0
	6급	1	1	0	0		0	0		
	6~7급	16	0	0	16		16	0		
연구사	4	1	0	2	2		1			
지도직	소계	32	0	0	32	32	0	0	0	0
	지도관	2	0	0	2	2				
	지도사	30	0	0	30	30				
기능직	소계	92	45	6	6	4	2	19	5	11
	6급	3	1	0	1	0	1	1	0	0
	7급	9	3	1	2	1	1	3	0	0
	8급	14	2	2	0	0	0	3	1	6
	9급	28	19	1	1	1	0	5	1	1
	10급	38	20	2	2	2	0	7	3	4